싱가포르법상 유엔 제재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2001년 유엔법

싱가포르는 보통법의 이원론 전통을 따릅니다. 조약은 국제적으로 국가를 구속하지만, 의회나 위임입법권자가 이를 입법화한 경우에만 싱가포르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합니다. 유엔헌장 제25조는 회원국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며, 제41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관계의 단절 등 무력 사용에 이르지 않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단은 2001년 유엔법(United Nations Act 2001)입니다. 이 법은 싱가포르가 헌장 제41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간결합니다. 핵심 조항인 section 2(1)은 장관에게 제41조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이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규정은 위반자의 체포, 재판 및 처벌에 관해 정할 수 있으며, 수사관에게 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2(2) 및 (3)은 금융기관과 가변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y, VCC)를 이 법에 따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이들에 대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관보*(Gazette)*에 게재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1] 규정 위반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개인은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위반자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이러한 설계는 싱가포르 입법 기법의 전형입니다. 의회는 기본 틀을 제정하고 세부사항은 행정부에 맡깁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매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잦은 변경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규정들은 공통된 형식을 따릅니다. 각 규정은 시행 대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시하고, 관련 제재위원회가 관리하는 명단을 참조하여 지정 대상자를 정의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및 예멘 등에 대한 제재 체제가 있으며, 결의 제1267호, 제1373호 및 그 후속 결의를 시행하는 테러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3]

금융기관: 통화청의 제재 체제

은행, 보험사, 자본시장 중개업자 및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싱가포르 통화청이 운영하는 별도의 병행 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부터 MAS는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section 192와 section 15(1)(b) 및 219(d)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표적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가변자본회사법(Variable Capital Companies Act 2018) section 83(1)(b)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제E편 제IV장에서 검토한 가변자본회사에 적용됩니다. 2023년 4월 28일자 현행 규정은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북한,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및 예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싱가포르의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4]

이 규정은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합니다. 금융기관은 지정 대상자의 자금,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동결해야 하며, 이들에게 자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지정은 별도의 법률인 2002년 테러자금조달억제법(Terrorism (Suppression of Financing) Act 2002)에 근거합니다. MAS는 규제 대상 업권 밖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싱가포르의 모든 자연인과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법인이 고객과 거래하기 전에 유엔 명단과 대조하여 고객을 심사할 것을 기대합니다.[5] 제H편 제III장에서 논의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이 체계를 완성합니다. 지정 대상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은행은 대개 의심거래보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란 제재 체제는 이 시스템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어떻게 따르는지 보여줍니다. 2015년 핵합의와 결의 제2231호에 의한 그 승인 이후, MAS는 이란 관련 거래를 금지하던 고시를 폐지하고 2016년 1월 이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6] 2025년 9월 27일 이 결의의 스냅백 메커니즘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자, 싱가포르는 모든 조항을 2015년 이전에 적용되던 형태 그대로 다시 적용했습니다.[7]

관세, 무역 조치 및 북한

유엔 제재의 무역 측면은 싱가포르 관세청의 소관입니다. 관세청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 반입 환적 및 통과를 금지하고, 두 국가와 안전보장이사회 조치 대상인 다른 국가로의 특정 물품의 수출, 반출 환적 및 통과를 통제합니다.[8] 화물 대부분이 환적되는 항만에서 환적과 통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싱가포르 시장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물품도 싱가포르의 터미널을 거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통과국이 이를 저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장 혹독하게 시험한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제2375호는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2017년 4분기에는 50만 배럴, 2018년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유는 직전 12개월 수준으로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구매를 금지했습니다.[9] 2017년 12월 22일의 결의 제2397호는 정제유 상한을 연간 50만 배럴로 낮추고, 해외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회원국이 자국 영해에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석유를 공급한 선박을 나포하고 억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10]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가포르는 결의 제2397호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2018년에는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불과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8번째 교역상대국이었으므로, 교역 중단은 중대한 조치였습니다. 기소도 뒤따랐습니다. 2016년 한 싱가포르 회사는 분해된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부품 및 전투기 부품을 쿠바에서 북한으로 운송한 일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싱가포르 회사가 북한에 음료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1]

법원과 유엔 제재의 한계

2011년 고등법원의 *The "Sahand"* 판결은 싱가포르법상 유엔 제재의 적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Cré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는 이란 이슬람공화국 해운(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IRISL)의 독일 자회사들이 소유한 선박 3척을 압류했습니다. 은행은 영국법이 준거법인 금융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1억 8,000만 미국달러 이상의 채무를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제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퀜틴 로(Quentin Loh) 판사는 싱가포르 해역에 억류된 선박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직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싱가포르가 이원론 법역이므로 결의는 국내 법령으로 입법화된 범위에서만 싱가포르법의 일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의 제1929호(2010)는 해운 그룹의 3개 기업을 지정했지만 그룹 자체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선주들이 그 기업들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거나 그들을 위해 행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결은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박의 압류가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12]

이 판결은 실무에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싱가포르에서 어떤 거래가 금지되는지는 국내 규정의 문언에 따라 해석되는 국내 규정의 문제입니다. 둘째, 제재는 표적 조치로 해석되며, 같은 국가와의 적법한 교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일방 당사자가 제재 대상 국가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싱가포르 법원의 해사관할권은 계속 작동합니다. 이는 선박 압류가 해사 채권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보전하는 일상적 수단인 항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제F편 제I장의 주제를 확인해 줍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제재를 법으로서, 법이 요구하는 정밀함을 갖추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주

1. United Nations Act 2001 (2020 Rev Ed), s. 2(1)–(3), (5)–(7), Legal Wires, "United Nations Act 2001"(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의 요약에 따름: 제41조 조치를 시행하는 데 "necessary or expedient"한 규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기관 및 가변자본회사의 제외; "as soon as possible after publication in the Gazette" 의회 제출. ↩

2. Legal Wires, "United Nations Act 2001"(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 5 요약: 개인의 경우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 그 밖의 경우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이 법은 Acts 9 of 2003, 4 of 2014, 16 of 2016, 44 of 2018 및 18 of 2022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개정판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됨. ↩

3. Singapore Statutes Online에 수록된 United Nations Act에 따른 규정, 그중 United Nations (Sanctions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ulations 2010, 콩고민주공화국 규정(결의 1596 (2005), 1807 (2008), 2293 (2016) 및 2582 (2021)) 및 테러 방지 규정(결의 1267, 1373, 1988, 1989 및 2253). ↩

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Regulations for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mas.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8개 국가 제재 체제에 관한 2023년 4월 28일자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및 2020년 1월 14일자 VCC Regulations; 이들 규정은 "apply respectively to all financial institutions and variable capital companies in Singapor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Regulations for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mas.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AS는 "section 192, read with sections 15(1)(b) and 219(d),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에 따라 제정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및 "se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83(1)(b) of the Variable Capital Companies Act 2018"에 따른 Variable Capital Companies (Sanctions and Freezing of Assets of Persons) Regulations 2020을 통해 "gives effect to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Lists of Design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mas.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명단은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United Nations Act 2001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를 포함함; "all natural and legal persons in Singapore should screen their clients against the United Nations lists"; Terrorism (Suppression of Financing) Act 2002에 따른 테러 대응 지정. ↩
6. *Lloyd's List*, "Singapore regulator cancels notice barring Iran transactions", 2016년 1월 29일: MAS는 이란 거래를 금지하는 고시를 폐지했으며 "will also revise MAS Iran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UN resolutions". ↩
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Lists of Design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mas.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UNSC는 2025년 9월 27일 "has reinstated the relevant UNSC Resolutions and Iran sanctions list"; 2015년 이전과 같이 "All provisions have been re-applied in the same manner as they applied". ↩
8. Singapore Custom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customs.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북한 및 이란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 반입 환적 및 통과는 금지되고, 이들 국가로의 특정 물품의 수출, 반출 환적 및 통과는 금지 또는 제한되며, 특정 물품은 "certain countries designated und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sanctions"에 대해 통제됨. ↩
9. Wikipedi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7년 9월 11일 15표로 채택; 정제유는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만 배럴, 2018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원유는 직전 12개월 공급량으로 제한; 북한산 섬유 구매 전면 금지.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0. Wikipedi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7년 12월 22일 만장일치 채택; 2018년 1월 1일부터 정제유 상한 12개월당 50만 배럴; 24개월 이내 북한 노동자 송환; 회원국은 불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선박을 “seize, inspect, freeze and impound any vessel in their territorial waters”할 수 있음. ↩

11. Wikipedia, “North Korea–Singapore relation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has officially suspended trade ties with North Korea under UN sanctions from November 2017”이며, 2018년 “in line with the enhanced sanctions in the UNSC Resolution 2397 (2017)” 북한인의 모든 노동허가를 취소함, *The Straits Times*, 2018년 3월 28일 인용; 싱가포르는 2010년 북한의 10번째, 2016년 8번째 교역상대국이었음; 싱가포르 회사 Chinpo Shipping은 분해된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및 MiG 전투기 부품을 쿠바에서 북한으로 운송한 일과 관련하여 2016년 “$125,700 in violation of United Nations-led sanctions” 벌금을 부과받음; 2022년 한 싱가포르 회사가 북한에 음료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됨. ↩

12. *The “Sahand” and other applications* [2011] SGHC 27 (Quentin Loh J, 2011년 1월 31일), Legal 500 (Mondaq), “Asia Update – April 2011”의 요약에 따름: 영국법이 준거법인 금융약정에 따른 1억 8,000만 미국달러 이상의 기한이익 상실 채무로 IRISL 자회사 선박 3척이 압류됨; 이란 관련 결의는 “legal economic activities”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님; Legal Wires, “The ‘Sahand’ and other applications [2011] SGHC 27”: 원고 Cré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대출 문서의 준거법은 영국법; S. Zhixia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UNSC sanctions on Iran in the Admiralty Context: The Sahand [2011] SGHC 27”, *EJIL: Talk!*: 판사가 직권으로 쟁점을 제기함, “a dualist jurisdiction”으로서의 싱가포르, IRISL은 지정되지 않았고 결의 1929 (2010) 부속서 III에는 Irano Hind Shipping Company, IRISL Benelux NV 및 South Shipping Line Iran만 등재됨, 독일 선주들이 이들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었다는 증거 없음, 선박 압류 해제.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